

법관 기피신청서 요약

사 건 2019가단5100724 손해배상(기)
신청인(원고) 전00 외 9명

■ 신청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072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판사 이00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신청원인

1. 이 사건의 경과

신청인(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0724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고 합니다)에서 피고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본제철'이라고 합니다)와 피고 JX금속 주식회사(이하 '피고 JX금속'이라고 합니다)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신청인들의 선대인 망인들을 강제동원하여 이들이 운영하는 광산 또는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는데, 이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이하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 일

본 군수 기업들의 조선인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불법행위를 통칭하여 '강제동원'이라고 합니다).

신청인들은 2019. 4. 30.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한 국외송달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다가 2021. 4. 22. 공시송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2021. 4. 22. 공시송달 처분 2개월 후부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는데, 피고들이 2개월이 되기 직전인 2021. 6. 14.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이라고 합니다)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피고 일본제철은 주00, 박00, 최00 변호사를, 피고 JX금속은 강00, 조00 변호사를 각 선임)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판사 이00은 2021. 8. 25. 실질적인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앞으로 두 차례(2021. 10., 2021. 12.)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2.경 선고를 할 예정이니 여기에 맞춰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

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별·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법관이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헌법상의 제도와 원칙들만으로 재판의 공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과 개별 사건과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제척 제도 외에도 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제43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

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4. 자 2018스563 결정 등 참조).¹⁾

이와 같은 판례 법리에 따르면, 기피이유는 단순히 해당 법관과 당사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건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특히,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이유가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도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법관과 소송 당사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과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였고,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은 물론 공정성에 대한 신뢰(외관) 또한 기피이유 판단에 고려하여 결국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기피이유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서도 이와 같은 법리를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1) 이 결정은 대법원이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들 사이의 이혼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계속 중 제기된 기피신청에 대한 원심의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항소심 재판장)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으로 근무한 정00에게 법관의 신상이나 동생의 인사와 관련한 사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사실이 언론에 모두 알려진 바 있고, 해당 본안사건의 원고는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로서 장00 사장과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는데, 이처럼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00 사장과 관계, 본안사건 원고와 장00 사장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기피신청의 이유

가. 본안사건 판사와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은 김앤장에서 장기간 함께 근무함

본안사건 담당 판사 이00은 1992년 판사 임용 이후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17년부터 다시 판사로 임용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의 본안사건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14년 정도를 판사 이00과 함께 김앤장에서 근무한 동료 변호사들입니다.

즉, 피고 일본제철 소송대리인 중 주00 변호사는 1983년 판사 임용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박00 변호사는 1996년 판사 임용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최00 변호사는 2000년 판사 임용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JX금속 소송대리인 중 강00 변호사는 2003년 판사 임용 이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조00 변호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역시 모두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들의 소송대리인과 판사 이00은 장기간 김앤장에서 동료 변호사로서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본안사건 판사 이00과 피고 소송대리인들은 장기간 동료 변호사로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적인 협업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 또한 상당했을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동료 변호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를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판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은 넉넉히 인정됩니다.

나. 본안사건 판사는,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대응팀을 꾸리고 일본 기업 소송의 대부분을 대리한 김앤장 출신임

국내에서 강제동원 사건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 2000년, 일본제철의 경우 2005년 시작되었습니다. 위 소송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 2018. 11. 29., 일본제철의 경우 2018. 10. 30. 재상고 기각(일본 기업 패소)으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사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사건 참조).

위 재상고심 사건의 미쓰비시 중공업 소송대리인은 김00, 이00, 조00 변호사였고 모두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역시 재상고심 사건 일본제철 소송대리인은 주00, 박00, 최00로 역시 김앤장 소속 변호사이자, 이 사건 신청 본안사건의 피고 일본제철 소송대리인과 정확히 일치하기까지 합니다.

위 두 사건이 재상고심까지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2012. 이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소제기도 이루어졌는데, 다른 사건들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소송대리 역시 대부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양00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제 식민지하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하여 2012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측에 불리한 판결²⁾을 선고하자 김앤장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대법원 환송판결의 파기를 위해 그간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 담당 소송팀이 진행해온 법률적 소송 대응 외에 청와대, 외교부,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하는 법률 외적 대응활동을 병행할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직 외교부 고위 공무원과 법관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징용사건 대응팀(이하 '징용사건 대응팀')을 구성하였다고 합니다.³⁾

또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앤장은 ① 강제동원 사건 담당 소송팀을 별도로 구성하였고, ② 2012년 이후에는 전직 고위 공무원과 법관 출신 변호사 등이 소송 외 활동까지 할 목적으로 대응팀도 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앤장은 개별 소속 변호사를 넘어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오랜 기간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을 맺어왔고 깊숙이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판사 이00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17년 판사로 다시 임용되었는데, 김앤장이 강제동원 사건에서 일본 기업 소송 대리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2000년대, 특히 김앤장에서 징용사건 대응팀이 구성된 2012년 이후에도 장기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의 본안사건이 제기되기 불과 2년 전인 2017년까지 김앤장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3)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 기사들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의 본안사건 피고들 소송대리인 중 일부는 소위 김앤장에서 구성한 '징용사건 대응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 이00에게는 강제동원 사건에 관하여 (그것도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인들이 모두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인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됩니다.

다. 강제동원 사건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김앤장과의 유착관계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재판의 공정성이 요구됨

나아가 검찰 수사결과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의 본안사건과 같은 강제동원 사건에 있어 ① 사법부가 청와대, 외교부 등 행정부 뿐만 아니라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김앤장에게도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였고, ② 법원행정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특정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등의 의혹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즉, 검찰 수사결과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외교부의 의견을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전달한 다음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한 형식적 계기로 삼고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김앤장은 법원행정처측과 긴밀히 논의하고 조언을 받아 외교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로 외교부는 해당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은 대

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은 접수된 지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원심은 확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그 대다수가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수 언론은 김앤장이 대법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환송판결의 번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판 절차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 등의 기사를 양00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강제동원 사건 재판 거래 의혹 관련 기사들).

특히,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양00 전 대법원장은 사건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양00 전 대법원장이 직무실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당시 계속 중이었던 강제동원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부와 김앤장 사이의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긴밀한 유착관계는 우리 사회 전체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강제동원 사건은 양00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는 헌정 사상 유례없

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적 사건인바, 사법부는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견고하게 인정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강제동원 사건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재판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존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령 판사 이00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와 김앤장 사이에 강제동원 사건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널리 보도되고 관련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는 김앤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판사가 강제동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의심할 객관적 사정은 넉넉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확인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실제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평균적 일반인들의 의심이 객관적 사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기피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 소결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이 헌법상 명문의 규정입니다(제103조). 법관에게 심판을 받는 국민들은 법관이 오로지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쫓아 재판을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사법농단’ 사건은 그간 법원이 이와 같은 국민들의 믿음을 철저히 배신하였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신뢰는 하루 아침에 무너졌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은 가히 대단했으며, 그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동원 사건에 있어 사법부와 긴밀하게 유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앤장에서 동료 변호사로 장기간 함께 근무했던 이들이 이제는 다시 또 다른 강제동원 사건인 이 사건 신청의 본안사건에서 판사와 피고들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이 나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이번 사건의 객관적 외관입니다.

이와 같은 외관을 이 사건 신청인들 나아가 국민들은 전혀 공정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동원 사건은 소위 ‘사법농단’의 핵심적 사건으로 사법부 스스로 공정에 공정을 기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앞서 언급한 의심이 해소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된다면 신청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역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갖지 못할 것입니다.

재판은 무릇 공정해야 함은 물론 공정하게 보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재판의 공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원과 법관의 존립 근거이자 재판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판사 이00은 본안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과의 특수관계 및 사건 자체에 대한 특수관계 등으로 재판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4. 결론

결국 앞서 언급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1. 소갑 제1호증 강제동원 사건 재판 거래 의혹 관련 기사들